

운 영 규 정

2026. 01



파랑새 재활 요양원

제 1 장 총 칙

제1조 【이념】

연로하신 노인들이 질병과 노환, 그로 인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은 본인의 삶은 물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 복지 전문가 그룹이 개입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관리를 통해 노인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에게는 노인 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복지에 이바지함을 설립 이념으로 한다.

제2조 【비전】

1. 편안한 거주환경 : 최적의 생활공간과 가족화 된 실내 분위기 조성으로 안정된 생활 조건
2. 행복한 노후생활 : 노후의 무료함을 덜고 기능 개선을 위한 최상의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3. 정성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전문화된 서비스와 병행하여 모든 종사자가 일치되어 노인을 섬기는 조직화 된 서비스 조직

제3조 【목표】

1. 노후 생활이 편안한 시설
2. 이용자를 마음으로 섬기는 시설
3. 가족이 신뢰하고 소통하는 시설

제4조 【목적】

이 규정은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고, 실천 있는 봉사로 어르신을 섬기는 시설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시설과 시설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입소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제6조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파랑새 재활 요양원 (이하 ‘시설’ 이라 한다)
소 재 지:	부산 강서구 범방3로46번길 11
연 락 처:	051-961-9940 이 메 일: es9940@naver.com
팩스번호:	051-961-9941 홈페이지: www.woori-together.co.kr

제7조 【입안 및 제정·개정】

1. 본 규정은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위원회에 발의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8조 【효력】

1. 운영위원회에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2. 본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제정일로부터 발생한다.
3. 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4.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건강보험공단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른다.

제9조 【의무】

전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은 이 규정의 근무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사 업

제10조 【사업내용】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증진 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2. 노인성 질환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3.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4. 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 시킨다.
5.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
6.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7. 의료 및 간호서비스: 건강 체크, 질환에 대한 관찰, 진료 지원 서비스
8.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작업)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9. 급식서비스: 식사 3회,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
10. 위생서비스: 아·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11.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12. 심리·사회증진서비스: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13. 정서지원 서비스: 여가 및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14. 사례관리: 대상자의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의 의하여 실시한다.
 - 가.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 나.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 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 라.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 15 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회의,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한다.
- 16 지역사회 자원 활용 :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자원을활용, 상호교류를 통해 입소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후원금 및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요양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

가. 인근 지역사회 자원봉사 연계

- 강서구자원봉사센터의 정기, 비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지역내에 있는 시민들과 소통을 한다.

나. 인근 지역사회 관계기관 연계 교육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 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당청구예방교육, 각종지침교육, 평가대비교육, 급식위생예방교육, 시설안전교육등에 참여
- 부산 강서 소방서와의 합동 훈련 : 연2회(상,하반기)의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을 연계하여 교육진행
-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 기업체와 함께 나들이를 추진

다. 인근 주민센터와의 연계

- 저소득 어르신 기관 상담시 주민센터에 의뢰하여 공적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독거노인 수급자 발굴 및 시설 이용 안내
- 저소득층 취업 알선 대상자 발굴
- 지역사회 어르신 초청행사 및 지역사회 행사 후원

제 3 장 운 영

제1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입소 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51인)**으로 한다.

2.입소 대상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나. 제2항 가목 1호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라. 제2항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건강진단서 1부
-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제2항 가목 1호의 일반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다.

- 1)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검사 포함)
- 2)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입소자 및 보호자 별도)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각1부.

바. 제2항 가목 2호,3호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입소이용 의뢰서가 시설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토록 조치한다.

3. 입소자의 모집

입소자 모집은 인터넷, 홍보지,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상담, 전화, 입소상담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입소자를 모집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다음 같이 한다.

2026년 입소비용 안내

구 분 (1일 시설급여)		1 등급 「93,070원」		2 등급 「86,340원」		3(4,5) 등급 「81,540원」	
요 양 급 여	노인요양시설	20%	18,614원	20%	17,268원	20%	16,308원
		12%	11,168원	12%	10,360원	12%	9,784원
		8%	7,445원	8%	6,907원	8%	6,523원
비급여	식비(3식) + 간식비	13,000원 (1식 4,000원 + 간식(1회)1,000원)					

구 분 (30일 시설급여)		1 등급[30일 기준]		2 등급[30일 기준]		3,4,5 등급[30일 기준]	
요 양 급 여	노인요양시설	20%	558,420원	20%	518,040원	20%	489,240원
		12%	335,052원	12%	310,824원	12%	293,544원
		8%	223,368원	8%	207,216원	8%	195,696원
비급여	식재료비(3식)	390,000[30일 기준] / 생계비지원대상자 0원					
30일 이용합계 시설급여 +비급여		20%	948,420원	20%	908,040원	20%	879,240원
		12%	725,052원	12%	700,824원	12%	683,544원
		08%	613,368원	08%	597,216원	08%	585,696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 일반	20%
■ 기타 의료수급권자	8%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 기초수급권자(의료수급자)	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 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파랑새 재할 요양원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이용자“을”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 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4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 【이용료 및 비용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입소자 서비스의 항목과 절차】

-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계약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과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 예방에 힘쓴다.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 시설 이용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 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 및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구분	내 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연습 보 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구 분	내 용	세 부 내 용
기 능 회 복 훈 련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셰라밴드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 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 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제공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협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저 제공, 산소공급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제공 등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통증간호	온·냉습포 제공

구분	내 용	세 부 내 용
간호 및 처치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 시 간호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시설 환경 관리	침구 린넨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 린넨 교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침실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켜고 끄기, 침실내 청소, 침실 세면대 소독, 침실쓰레기버리기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기 타 서 비 스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치매관리지원	배회·불결행위·폭력행위·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의사소통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 (편지, 신문 등 배포), 콜벨 대처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제1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자 및 직원들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가.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나.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입소자가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의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가. 의료 전문기기와 소화기 등은 시설 내 담당자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나.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하 “갑”)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이하“을”)에게 배상할 무를 진다.
 -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 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을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한화손해보험)
 - 가.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가입
 - 대인, 대물 일괄 (보장금액:1억)
 - 나. 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
 - 1인당 1억
 - 1사고당 5억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 다. 시설 화재보험 가입
 - 화재배상 : 대인1억 / 대물5억 / 화재벌금 2천만원

제19조 【급식서비스】

시설은 입소자에게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촉탁 의사나 영양사의 식단에 따른 특정한 환자식이나 개별식을 제공하여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게 섭취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시설 내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호칭은 존칭을 사용하며 희망과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칭을 사용한다.
3. 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시설 입소자의 개인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전혀 불편한 중증 이용자는 제외한다.
5.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소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
6. 입소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별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하여 보호자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에게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시설장 승인 없이 열람을 금하며 입소자에 대한 정보의 외부 유출은 공문서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토록 한다.
7. 입소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8. 시설 내에서 사망한 입소자가 무연고자이거나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장례절차에 따라 장례 의식을 시행한다.

제21조 【여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1. 시설은 문화적 여가생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가 다양한 취미, 문화생활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도서 및 TV 라디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2.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서비스를 통한 기초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가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제22조 【재활치료 서비스】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필요한 개별적 특수 프로그램(중풍, 치매, 중증요양자) 또는 치료프로그램(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제공하여 신체기능유지 및 건강악화와 질병재발을 최대한 지연되도록 기능향상에 노력한다.

제23조 【노인학대 예방】

1.(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의무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시설의 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시설의 장은 직원이 노인 학대를 행하였다면 지체 없이 업무를 중지시켜야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장등 신고 접수자는 응급조치의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시설의 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조인의 선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바. 기타노인학대의 유형은 노인 학대 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한다.

5. 조사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나.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비밀누설의 금지)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7. 시설의 장은 노인 학대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자와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라.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 (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특별침실 사용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동의를 얻는다.
-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계약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나. 정기 병원 진료시 처리절차
 - 1) 병원진료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